

## [워크샵7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

-심우민: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주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사항이고 개정하면서 많이 공부를 해서 다른 선생님들 말씀 듣고 많이 배우고 저도 의견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심교수님께서는 사정상 다른 오후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전에 다 말씀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웃음)

-고환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두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다른 전문가분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저도 듣고 배우려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고요. 해커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된 해커톤 두차례 모두 참석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특히 오병일 활동가님들과 같은 전문가 분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게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회자: 네, 반갑습니다.

김재환 실장님, 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업협회 김재환입니다.

인터넷기업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참석했다기보다는 저는 KriGF 거버넌스 포럼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왕성한 활동을 못해서 죄송하고, 작년에도 일정상 포럼에도 참석을 못해서 많이 죄송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 세션이라도 참석해서 의견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리다면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라는 바가 많습니다.

이제 출범하셨으니까 오늘 나온 의견 계속적으로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주시면 그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반갑습니다.

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님 나와계십니까?

정지연 총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나요? 혹시?

-김재환: 안 보이십니다.

-사회자: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치 않아서 전체화면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여경 상임이사님 소개바랍니다.

-장여경: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권여구소에 있는 장여경입니다.

8월 5일부터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또 바라는 바도 있어서 오늘 그런 것과 관련한 여러 말씀들도 듣고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네, 반갑습니다.

정 사무총장님 나오신 것 같네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볼륨을,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정지연: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입니다. 링크가 잘못돼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회자: 제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한참 일하다가 회의실 쪽에 와 있는데, 저는 윤복남 변호사라고 하고요. 8월 4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전임위원이 되었습니다.

훌가분한 마음에서 새 기수로 말하면 4기인데, 새로운 기수로 보여집니다마는 후임 보호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을 모아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개인적인 소개도 하고, 간단한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쟁점으로 소주제들이 6개나 됩니다. 한시간 반동안 얼마큼 심도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출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다들 받으셨죠? 첫 번째 소주제는 이렇게 쓰여있네요. 8월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선 순위를 두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아까 인사 순서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할말이 많으신 분이 김재환 실장님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김재환: 네, 감사합니다.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을 8월 5일날 하고 그런데 그이전에 데이터3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의 말씀들이 있으셨고, 거기에는 오류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대립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좀 잘 조율하고 조정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것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과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를 포함해서 그런 제도에 대한 통보? 안내들이 좀 많이 되어야 다양한 국민들이 이런 정보에 대한 오해로 인한 두려움? 걱정?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위원회 출범도 홍보해 주시고 관련된 새로운 제도도 설명 많이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예상보다 소프트하게 나오시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조율이 중요하고 가명 정보를 포함한 홍보 및 안내가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면 순서 지정권을 가져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자유롭게 먼저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이러면 또 안하.. (웃음)

심우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심우민: 일단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고요. 일단은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소비자의 보호 내지는 이용자의 보호 인권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은 무차별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통합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향후에 법이 적용이 되면서 통합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무리 법을 뜯어봐도 악은 미지수입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한 측면들은 있지만 여전히 신용정보보호법에 상당수의 권한이 금

금융위원회에 가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말고도 의료법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실제 조문의 문구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실제 사안이 발생하면 개보위가 아무리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부처의 소관을 넘어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보위가 가장 중점을 뒀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 하나의 사전조율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교육, 의료파트 이런 부분들과 법 집행과 관련한 조율의 문제 먼저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제일 활동하면서 개보위에서 의논되었던 게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실제 얼마만큼 확진자들의 동선 정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쪽이나 이 쪽과 의논해서 진행을 할 거냐?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아쉬웠던 게 제 경험에서도 적극적이지를 못했어요. 과거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심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개보위가 된 마당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금융위 문제는 별개로 다루더라도 금융위 의료 파트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훈경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고훈경: 가장 중요한 개보위 우선순위들을 이미 심교수님이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정보 쪽 실무를 많이 관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심교수님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일관적인 해석, 전체적인 부처마다 다른 해석들이 문제되어져 왔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개보위가 특히 해석주무기관으로 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 수관법률인 신용정보법은 해석권한을 금융위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같은 유사한 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이루어졌을 때 수범자는 어느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같은 조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특히 정보 입장에서 그 혼란이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관된 어떤 해석, 매커니즘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외에도 의료법이라든지 생명윤리법, 교육 관련한 법도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특별 법령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산업계 입장에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왔던,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주무부처이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총괄 부처로서 통합부처로서 강력한 집행권한을 갖게 되는데,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나가야 되는지 정책방향,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계의 입장만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보호의 측면에서 인권적인 측면은 어디까지 어떻게 균형점을 가져갈 것이며, 특히 그동안의 이런 어떤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가 마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것처럼 오인됐는데 실제로는 개인정보 처리자도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협력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맥락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라든지 철학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로 불거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정보주체의 인권침해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방점을 가지고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역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부분이 상당히 여러 전문가들, 이 자리 논의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부처별 이렇게 권한이 나뉘진 상태에서 일관된 해석. 그리고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들어봤을 때는 산업계 쪽에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활용의 중요성과 반면에서 인권 보호 중요성을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 이게 개인정보위원회로서는 어려운 숙제, 단순한 정반대의 두마리 토끼가 아닌, 어떤 균형점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 화면에 순서대로 말씀 나누고 계신거 알고 계시죠? 장여경 사무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장여경: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굉장히 막대한 권한을 과거에 대해서 획득하게 됐는데, 사실 그 배경에는 이후 적정성 평가가 자리하고 있죠. 그 유럽의 GDP 평가 기준에서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아니었습니까?

그것때문에 2015년에 우리 정부가 한번 적정성 평가 신청을 했다가 부적정 결정이 났었고요. 이처럼 사실은 국제 사회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대한 국제 규범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 규범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1차적으로는 독립규제기구로 분류가 되고 독립규제기구는 피규제대상으로부터 피규제대상의 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국제규범이 확립되어 있고, 그래서 유럽사국재판소에서는 기본권의 수호자라고 불렀죠. 그것때문에 독립성이 필요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적일 이유가 없는 거죠. 독립성으로서 정보주체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렇게 막대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국민들이 지지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위가 왜 필요한지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지 그 예산과 그 인원에 대한 정당함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원스톱으로 잘 보여 질 수 있는 안내가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민간단체들은 이미 데이터 3법 통과 이후에 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걱정 어린 민원이나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잘 할 거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국민들 눈높이에 굉장히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나 안내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네,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 된다는 의미가 정부기관 내에서도 일정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향후에 인간을 규제하는 기관으로서도 상당히 독립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정보주체 보호쪽이다. 이렇게 말씀주시면서 특히 새로운 제도화해서 어떻게 정부 부처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달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 다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까요?

목소리 다시 ..!

-정지연: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튼, 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사실은 정부가 '데이터 3법' 통과시키면서 소비자에게 활용도 중요한데 너무 활이예요. 활용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소비자 쪽에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독립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웹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그 다음에 그런 당정청이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그런 정치적인 부분으로부터의 독립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쪽 목소리를 내줄 수 있을 때 저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여기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소비자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라고 싶은 부분은

중요한 위원회에 참여하다보면 보여 주기에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회의 같은 것들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쨌든 이후에 보도 같은 것들을 딱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소통을 활발하게 해서 민간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저한테 들린 키워드에서는 신뢰, 전문성, 독립성, 소통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민주 사무관님 아주 열심히 타이핑, 잘 듣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주시는 말씀 제가 다 적어서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일단은 아시겠지만 보호와 활용 간의 노력하겠다. 말씀 해 주신 것처럼 전문성이라든지 내부적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생조직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늘 기울이도록 노력하겠고요. 아까 기관간의 법률해석이 갈릴 경우에 수범자들이 혼란이 많다. 이것에 있어서 기관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내실있게 구축을 해서요. 정책 협의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처 간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아마 어깨가 무거우실 거예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년 반 정도의 보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정사무총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했거든요. 보여 주기식의 토론은 없었고요. 정말 열심히 토론했고, 비상임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토론해서 결정하는 문화들은 과거에 쪽 만들어져왔다고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안가본 길은 다른 정부부처의 협업이라든가 민간영역을 컨트롤 하는 것이 행안부의 권한을 이어받아서 규제를 직접 하지 않습니까?

정부부처의 조율이든, 민간의 직접적인 관여에 대해서도, 또 다른 전문적인 국제영역인데요. 이제 다행히 적정선 평가의 초안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계가 있는 만큼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몇분께서 보호와 활용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는 데이터 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호자 떼고 개인정보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보호도 하고 활용도 해야 되니까. 장이사님께서서는 다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활이예요.

활용과 보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깊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말을 해도 다 옳은 얘기 같은데,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게 달라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제가 두마리 토끼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이게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럴 때 각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한 위치나 전문가의 견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현시점에서 뭐가 중요한지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떻게 방점을 뒀야 하는지. 이를테면 사무총장님께서서는 활용에 치우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솔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해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순서는 아니겠지만 다시 김 실장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김재환: 정말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보호와 활용. 그런데 어느 부분에 포커싱 해야 된다는 게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판이 너무 보호에 치우친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그동안 있어 왔던 중에 올해 개인정보가 개정되면서 활용과 관련된 물꼬가 트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법개정도 완전히 체계적으로 통합이 된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이 있던 거를 특례 개정으로 들어오고 기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던 것들이 형식적으로만 통합이 되다보니까 개인정보처리, 공공기관 영역에서의 개인정보처리. 서비스 영역에서의 개인정보처리가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가명정보의 활용, 결합에 있어서 보호 조치 안전장치를 준비해놓고 마련해야 하지만 잘못됐을 때 처벌조항이 너무 심각해서 활용에 대한 물꼬를 트이기는 했는데, 정말 사업자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가명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가명정보를 가지고 통계작성을 하든,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결합을 요청해서 결합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일단 많이 두려울 것 같아요. 기존에 비식별조치한 것 가지고 형사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비식별화하면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인데,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정보를 가명화된걸 개인정보화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매출의 인상되는, 여러 가지 제재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항만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이 찾아진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행정연구가 돼서 의견을 받으셨던 걸로 아는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가이드 라인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존에 방통위와 행안부에 있던 고시나 가이드 라인 등등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적인 활용, 그리고 안전한 활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자들이 가명화해서 안전하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시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많이 사업자분들하고 저희 회원사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막연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길

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역시 소프트한게 맞죠? 기업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가명정보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과징금의 위험부담과 이 속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현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제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오히려 활용점에 좀 더 물꼬를 터달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유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 지명을 순서대로 안할 테니까 김재환 님의 의견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편하게 말씀, 손만 드시면 됩니다. 누가 다음 말씀 이어갈까요?

예, 고변호사님.

-고환경: 아무래도 조금 더 실무적인,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균형점, 필요성에 대한 핵심적인 여러 가지 실무에서 제기되는 이야기들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토론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체가 EU, 최근에 시행됐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CCPA 등과 비교검토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할 기회들이 개인적으로 있고, 또 책도 한번 같이 원문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많이 지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체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정보 동의에 의존하고 있다. 동의 규제가 정보통신망법이 특례조항으로 흡수됐지만 특히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조차도 계약처리라든지 다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과징금 규제가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에서마저 형사처벌을 두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그런 측면이고, 오히려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무조건 산업계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비교해보면 개인정보보호처리자의 취급자만 제재하는.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은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미비한,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 주체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호와 활용이 있어서 균형이 상당히 깨져있고 법집행과 관련해서는 일관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만 가중돼왔던 거죠. 이것을 글로벌 수준으로 규정을 하되, 동일 규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사회적 공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 3법'에 대해서 가명정보 개념정도만 도입이 돼서 과학적 연구라든지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결합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진전된 부분이 있는 거죠. 활용에 너무 방점이 찍혀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잘 이야기 해 주셨지만 기업들 가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면 받는 질문이 너무 제재 수준이지 높아서 가명처리 함부로 못하겠다. 제도를 마련해도 실제로 그것이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서 어느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활용을 열어주되, 보호수준을 올리려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법제도가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동의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전규제에 대해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주체도 고지되는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고지내용은 다 클릭하면서 데이터 독점이라든지 그런 류의 스타트업이나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모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사전동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수준 정도, GDP 수준만으로도 수준이 개선되거나 그런 논의들이 적어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호 활용에 있어서.

특히 안전한 활용이 없으면 기업도 망하고 정보 주체도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되고 이런 류의 인식은 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구체적으로 산업계 쪽에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법무업무를 하시면서 또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동의제도의 글로벌 수준보다 의존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다른 분.

장여경 이사님.

-장여경: 제 생각에는 기업들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들 하고 정보주체간의 인식의 차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는 오히려 정보 주체가 되게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지만 전부 무혐의 처리났고, 처방전을 가명화해서 판매를 했고 국외에 기업에게 유출이 됐는데도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났고. 훔플러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소비자 단체들이 소송을 했지만 사실은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서 정보주체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이 자기 개인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책임지고 있지 않다. 형사적인 정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불만이 정부주체들은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데이터, 큰 빅데이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수집을 통해서 이동통신이나 본인 확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가공해서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보주체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다. 나 모르는 새에 내정보가 판매되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이게 기업들은 활용이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정보주체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정보 주체들이 결국은 신뢰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빅데이터 산업이나 개인정보 처리할 때도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불안이나 불만들이 가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동의권도 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기업들이나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발표자료를 보게 되는데 이용자들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클릭이 귀찮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동의하는데 내용을 이해못하겠다. 동의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판매하는 것까지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충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있어서 정보주체가 바라는 것은 너무 활용이 일방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정보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결국에는 데이터 산업이나 이런데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냐. 데이터경제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냐. 이런 의견들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자: 정보 주체쪽에서 입장 잘 들었습니다.

-정지연: 장 이사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김 실장님께서 그동안 법이 너무 보호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활용도 안 되면서 보호도 안됐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인 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죠. 어쨌든 동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업자에게 면책으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기업들이 수집,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으면 크게 불만하지 않을텐데 수집 목적을 넘어서 계속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동의 만능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수집목적에 맞도록 법이 개정된 시행령도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호와 활용에 대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를 너무 사후적인 필요 구제로 갈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부분을 예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그런 부분들은 예측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기술, ICT나 IOT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고 하면서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들이 많이 열렸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런 부분 예측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우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유권 해석 같은 것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기관이 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민간 위원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예측 가능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스타트업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확실히 정보주체 입장이나 기업이나 산업계 입장에 따라서 분명히 초점은 달리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호위원회가 갖고 있는 숙제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상반된 요구 같은데, 어찌되었던 다 불만이라는 거거든요. 기업입장에서는 제대로 못써먹으니까 불만, 정보주체입장에서는 제대로 보호 못하고 있어서 불만. 이게 다 불만으로 누적되어 있는 건 사실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숙제가 남겨진 것 같습니다.

심 교수님 코멘트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심우민: 일단은 말씀해 주셔서 다 나오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기업입장에서는 잘 활용할 수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권익침해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게 왜 발생하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행 법제가 잘못돼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원인자체가 기술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현재 기술은 과거처럼 어떤 A라는 요건을 정하고, 기존의 법이 친화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EU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내고 그때그때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어떤에는 기존에 판단한 것과 사후에 판단한 것이 달라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되게 유동적이다. 형식적인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다는 게 그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보인다면 지금 저희가 논하고 있는 쟁점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런 아주 유동적인 상황에서 형식적인 규정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것인가.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가 무언가를 해석하고 지침하고 그때그때 맞는 상황대응을 해 주는 것. 그게 보호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인 것 같고요. 법률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아까 정지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어떤 의견들을 제시해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산업계도 움직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럽연합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보면서도 이것을 만약에 똑같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우리나라에서 내면 과연 산업계나 시민사회진영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그럴지 않다라는 거죠. 문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신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 또 산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맥락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지. 법에 정해진 문구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는데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고, 보호위원회가 신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 전공이 개인정보 쪽이 아니었고 직접재산권 쪽에 있다가 보호위원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놀란 것 중에 너무 예민해서. 탄력적인 기술 환경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유럽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한들 우리나라 환경에서 다 동의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있어 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균형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좀 추상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능력과 그것에 대한 나름의 이해당사자들의 수용력이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사무관님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법제도에 있어서 개선점이나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원가를 하자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탄력적인 해석이라든지 신기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유를 해봤고, 그런 점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나의 규정을 구체화시켜온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여년의 과정에서 보자면 그런 구체화가 많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논란만 했던 것은 다른 데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그런 쟁점을 다 포함해서 향후에 우리도 좀 새로운 위원회로서 변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주제는 많은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1번, 2번 주제가 중요한 주제라고 봤기 때문에 패널분들께 시간을 충분히 드렸던 거고요. 3번 이후에는 전원이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분만 말씀하시되, 대신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는 주제에 맞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부의 데이터 정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근에 데이터 청을 만든다면 이 데이터 정책과 관련을 맺어야 하지? 이런 이슈를 생각해 본적이 있고요. 아까 장여경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지연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성의 문제, 그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비슷하지만 다른 결의 쟁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께 먼저 마이크를 드릴게요. 통과?

-장여경: 일단 개인정보 감독기구 독립성에 대해서 판례도 몇 개 있고, 국제 연구자들의 국제 문헌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독립성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피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국가기관인데,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해서도 감독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규제기관이자 어떻게 보면 소속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 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직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나 예산이나 모든 것에서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국제규범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받아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국회 여당이나 데이터청이나 데이터 활용부문에 힘이 많이 쏠리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이 제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3법을 추진할 당시 정부가 표방했던 게 하나가 한축으로는 활용을 하면서 한축으로는 안전하게 한다고 했을 때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할당했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님이 '데이터 3법'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한쪽으로는 활용을 하지만 안전하게 할 거다. 그런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강화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도 나고 그 기대에 부합하는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위법령이랑 관련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측에 하위법령 개정관련해서 굉장히 심히 뭐랄까.. 압도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하는 것은 없거든요. 정부가 수정해서 재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은 기업들의 요구에 굉장히 세력적으로 많이 밀렸다고 보여 지고.

정부안팎에서 말씀드릴 때는 기업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 듣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주체나 소비자들은 정부와 소통하는 경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의견을 되게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큰 데이터 정책 견제가 되어야 하지만 데이터 처리자인 피규제자로부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고시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을 할 텐데, 지금 셀프 결함을 허용해 달라. 그런 요구들을 기업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세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결함전문기관을 따로 만들자는 한 것 자체가 안전하게 결함을 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분리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지금 고시수준에서 셀프결함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받고 있고, 그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나 규제기관들이 약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법개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수인해온 한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안전한 활용 역할을 일임했던 부분에 영두에 두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회자: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 예, 하시죠. 사무총장님.

-예, 저는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 이익과 프라이빗 사이의 감금, 개인에 관한 국가의 감시가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공공부분에 대한 감독이 저는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이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부분의 개인정보 활용이 법령개정에 따라서 한번 정해지고 나면 사후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분의 개인적 활용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하고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혹시 다른 분들 의견. 고변호사님.

-고환경: 여튼, 앞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어서 심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기술의 변화 때문에 각국이 개인정보관련 법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동의규제가 딱 사전동의 규제가 그런 패러다임에 묶여있는 규제라고 봤던 거고, 기본

적으로 활용은 해야 하고, 그 활용이 정보정책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영두에 두고 자문해드리는 거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단순히 가면 사회 갈등만 계속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자를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반자, 자율규제의 하나의 틀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바꿔주지 않으면 기존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재적인 수준, 대립적인 피규제 기관 관계로만 설정해서는 상향, 제고는 당분간 어렵다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지금 감염병 예방법 때문에 잘 얘기해 주셨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 동성공개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인권침해적인 측면, 이슈들이 사실은 더 우리가 인공지능 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활용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더 어떻게 보면 관심있어 하고 유혹을 느끼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언론적인 독립성에 조금 더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서 그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IT 기업들이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의 영장집행이라든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부분에 대한 감시와 통제 사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개보위가 해 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산업정책이 개보위가 완전히 무시하기가 어려운데,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은 아무래도 개보위의 역할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근본적인 자기 역할로 가져가기는 어렵지만 다만 개보위가 이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적절하게 가져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심우민 교수님 먼저 할게요.

-심우민: 일단은 사실 내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찾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쟁점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게 독립성보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현재 개정된 것 살펴보면 앞에 또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관할을 받게되는 게 상당수가 되어 있거든요. 정부가 정책 개정에서 데이터 활용에 총점을 둔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기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개입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독립성이라는 게 말로만 있는 건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짧아서 뒤에것 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개보위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고 할 때 프로세스나 절차에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아예 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아까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보면 최종 가이드라인도 나오지만 그전에 컨설팅 했던 것을 다 문서화해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자는 어떤 의견을 줬고, 이용자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다 공개하고 그것에서 온 가이드라인, 이런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수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산업을 진흥해야 되는 부처들이 있죠. 그런 부처들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 의견은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의견도 수렴해봤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령평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공개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해서. 부서한테만 권고를 하고 실제로 웹페이지에 공개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공개를 하니깐 권고니까 부처들이 안 따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권고가 공개가 되니까 심적인 부담이 있어요. 개별부처들이. 그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권한을 유지하면서 독립성도 발현하고 전문성도 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개성, 문서화된 공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재환: 네, 저는 독립성 관련해서 장여경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나오고 그이후에 입법예고가 나오고 재입법 예고가 나왔던 것은 저희가 산업계에서 개인정보 추가 이용이나 결합절차와 관련된 내용중에 일부 위임입법의 한계가 초과하는 부분이 시행령에 담겨져 있다. 그부분을 입법취지에 맞게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올라가면서 의견을 드렸던 거고, 기업의 이익에 수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법의 위임된 취지에 맞게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피규제기관 독립까지 말씀하셔서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안전하게 활용을 하고 동의제도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런 절차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법과 시행령, 사회규칙으로 갈수록 뭔가 선명하게 수범자들이 예측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에서 정말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수렴된 상태이다보니까 ICT 산업에 기반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산업계에서는 하고 있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있어야 전문성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책 개발이나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제와 약간 결을 달리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내용자체로서 의미있게 들었고요. 사무관님께서 좀 이따 마이크 드릴게요. 메모 잘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 주제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심우민 교수님께서 공개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안 지켜지는 원칙 같아요.

그리고 또 잠깐 실장님이 말씀주셨는데 참여 이야기에서 회의 자체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2년 반동안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참가하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옛날에 시민 단체에서 일부 참여했다고는 들었지만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데 발언권이 주어질지. 의사결정이 반영될지는 별개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개되어 있는 회의에 참여해서 워칭하는 것은 필수거든요. 따라서 아이디어주신 전문가로서 의견 참여의 길을 열어달라는 것은 향후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전단계에서도 공개가 얼마만큼 잘, 참여 형태로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요구를 해왔다는 것을 공개한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의견일텐데, 원지는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개인정보위원회가 들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으로서 형성되었는지 이부분은 명료해야만 독립성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이야기는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하고 왜 연결되냐면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공개이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참여거든요. 이 두가지를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향후에 개인정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에 강조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따로 없으시면 두 분이 하신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럼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주제는 심교수님이나 김실장님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고요.

쟁점 5번이 조금 전문적인 주제입니다.

의결기구로서의 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가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 코멘트는 어떤 고민이냐면, 과거에 통합대보위 이전에는 의결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법령해석이든 18조 5항에 의한 그부분에 대해서 주로 위원회 의결을 위주로 냈었고요. 행정관청으로서의 역할은 너무 작았습니다.

반면에 통합개보위에서는 국무총리산하의 기관뿐만 아니라 행안부 권한과 방통위 권한을 그대로 수용해왔지만 어떻게 운영되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거나 통합개보위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분 말씀바랍니다. 역시 손 안 들으면 넘어갈까요? 아직 이야기 할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정지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아까 이어서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그런 기구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의 부분은 어쨌든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의결을 할 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은 정부의 그런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 그런 방안이 독립성을 할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사회자: 또 다른 분들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은 오히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오히려 정식권한을 가지신 분들, 상임위 분들 표결권을 양해하시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마는.

-장여경: 제가 하는 얘기가 오늘 줄곧 한 가지 주제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2년 반동안 개인정보위원회 활동하면서 느낀거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정보주체 권익보호입니다. 이해당사자의 거버넌스 구조로 보더라도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데이터 결합 거버넌스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구조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뭔가 제시하거나 아니면 국가데이터정책에 정보 주체가 또 조직화돼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조직화되어 있는 산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주체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주체와 접촉하는 면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좀 모색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버넌스 구조에서 한축으로 절대 정보주체를 이해당사자 중에 하나인 누락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결정하시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사회자: 네, 고변호사님.

-고환경: 개인정보보호법위원회가 독립부처이기 전에 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고 집행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숙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제재, 관련한 처분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고려들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나왔지만 내부 임직원들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상

당히 중요할 것이다. 결국 의원들께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전문성이 있으면 좋는데,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기술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역량평가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국 사무처나 관련 직원들의 역량,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기능은 장여경 이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보주체의 권리실질적 보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튼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 지금까지 왜 자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의 그동안 법집행이나 법지도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나면 프라이버시 지도가 뒷전으로 가있고 개인정보 자체의 수직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의 실질적인 보호, 감염병 예방법 때문에 그것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사회적 약자나 차별 라벨링 이런 낙인 이슈로 불거지는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학이라든지 정보주체의 편에서의 정책수립이 중요하다. 그부분에 있어서 막연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식의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 4차 산업에서 극대화될 수 있을지. 정보주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보호나 기술적 강화는 개인정보처리자도 자기네의 레프티에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함부로 범위반하거나, 이런 신뢰를 잃어버릴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기업책임성 강화라든지 추가적인 보완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관점이 나오기 어려운 거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원래 쟁점6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10분 미만인데요. 중간에 말씀드렸다듯이 심우민 교수님이 4시에 나가셔야 한다고 해서 문자 남기셨고요. 패널로 참여하지 않으신 플로우라는이 맞는지 말은 모르겠지만 메시지로 채팅 메시지로 올려 주시면 그분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5분 안에 올려주신 분에 한해서 한 분 내지는 두 분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긴 뒤에 플로우 분 의견 듣고 마지막은 고민주 사무관님께 마이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동안 내용과는 결을 달리하고 우리 공통의 숙제 같은데요. 세계적인 개인정보 보호에는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 우리가 적정선 결정을 받게되면 어쨌든 EU 쪽과는 활발한 교류가 될텐데, 사실은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수립에서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은 후발 내지는 상당히 법제도 자체는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고 내지는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뒤쳐져 있지 않나 라는 점이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자율적으로 의견 있으신 분 위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부담스럽나요? 너무 거창한가요? (웃음) 네, 실장님.

-김재환: 관련된 제도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전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환경을 조금 달리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GDP가 만들어진 배경,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부 수용해서 법을 개정하게 된 과정, 그런 것들이 조금 똑같이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글로벌적으로 개인정보보호주체, 권리보호를 하기 위한 방법은 똑같겠죠. 하지만 해당 지역, 또는 나라의 독특한 패

턴 그리고 기업들의 운영 방식, 개인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수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라고 싶은 게 그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GDPR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선진화된 것처럼 그냥 수용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산업적 특성에 맞지 않고 걸림돌이 되고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 가파 라고 표현되는 기업들의 정보 유출을 고려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들은 토종 기업들도 열심히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패널 분들 기회 드리고 이 주제는 마무리 할까 싶습니다.

더 없으시면 .. 플로우에서는 따로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장여경 이사님께서 플로우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혹시 그간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우리나라에 개인정보 불명확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인권 조약들 참고해서 활용하신 사례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우리나라 내에서 국내법으로 부족한 경우에 국제적인 규범을 활용해가지고 해석한 예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장여경: 아니, 일단 저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나 사무에 계신 분들이랑 토론하면서 어쨌든 제도적인 상상력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제안을 간혹 한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처리자 기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무를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자냐, 아니냐. 누구 업무냐?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메이킹파워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자동화된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 규범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는 이런 논의가 있다고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이 되거나 현행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하위 법령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판단이 바로 적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기술은 지구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 처리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간격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하고 미국 간극이 컸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개인정보규범이 강화되고 있고, 연방차원에서는 GDPR 수준에 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미국도 그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번에 GDPR에서 걱정하다고 판단했던 미국의 프라이버시 쉴드가 미국 사법재판소에서 무효 결정이 났어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세계적인 보호규범은 점차 차이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규범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계속 영두에 두어가면서 신기술 환경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다른 플로우의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운영미숙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운영진의 요청이 4시 10분 정각에 끝내야 한다는 요청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로 연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플로우 질문에 답하지 못한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 1분이라서 사무관님께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오늘 패널분들의 좋은 말씀 정말 도움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 정책을 만들고 수립함에 있어서 꼭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사로 브레이크없는 차는 빨리 달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저희는 기업을 포함해서 국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확보를 함으로써 저희가 정당성도 얻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열성적인 토론 덕분에 풍성하게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마지막 발언기회 못드린 것 양해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세미나 마감하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